



## (주)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「금융 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 
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### 1. 공시 사유

-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

### 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1명 이상)	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1명 이상)	정보기술부문에 예산의 7%이상 (4백만원 이상)

### 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미충족	미충족	미충족 <sup>(주)</sup>
0% (국내 인력 0명)	0% (국내 인력 0명)	미충족 <sup>(주)</sup>

(주) 본 공시일 현재, 당사 귀속 정확한 정보보호예산비율은 확인 가능하지 아니합니다.

### 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- 1) (주)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(이하 “당사”)는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로서, 당사의 정보기술(IT) 및 정보보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, 해외 모회사 (Hewlett-Packard Company, "HP") 내 IT 및 정보보호 전담조직 으로부터 당사의 IT 및 정보보호 업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.

- 당사의 IT 및 정보 보호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, (한국 내 IT 상주 인력을 두는 대신) 당사는 해외모회사(HP) 내 IT 및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한국 내에 별도의 IT 조직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, HP 내 IT 자원과 적격한 인력을 보유한 IT 및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사의 IT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적절히 수행,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HP 가 IT 및 정보보호에 지출하는 (타 평균기업 대비) 투자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, 이러한 HP 의 IT 및 정보보호 인력 및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



정보보호 수준은 당사 내 별도의 IT 상주 인력을 두고 소규모 IT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이행 가능한 정보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믿습니다.

- 다만, 본 공시일 현재 당사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에 적극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P 그룹의 IT 및 정보보호 예산은 그룹 단위로 산정되며 (HP 그룹 정보보호 예산 비율 약 1.8% 수준임), 각 개별국가 귀속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하여, 정확한 당사 귀속 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

2) 당사의 인력 및 예산 비율 권고 수준 충족 여부와 별도로, 당사는 HP IT 및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협업 하에, 엄격한 HP IT 보안 방침·기준과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 당사의 IT 및 정보보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HP의 IT 및 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은 국제적인 정보기술 보안 기준, 즉 ISO/IEC 27000 기준 뿐만 아니라, ISACA, NIST, CIS와 같은 다양한 산업 기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
- 이러한 HP의 IT 및 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에 근거하여, IT 및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지원 하에, 당사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자 각 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3) 당사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당사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이 우려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잠재적 유출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.

## 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- 당사는 전자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, 당사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의 잠재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2015. 01. 30.

(주)에이치피파이낸셜서비스

대표이사 미켈레 마도니니 (Sign)